

소방조직의 발달사

우리나라 소방조직의 발달사와 더불어 소방법령, 소방시설, 소방시설관련업의 발달사에 대해 알아본다.

허 중 구 / 재무이사

(주)용도엔지니어링(jkhuh@ungdo.co.kr)

소방조직의 발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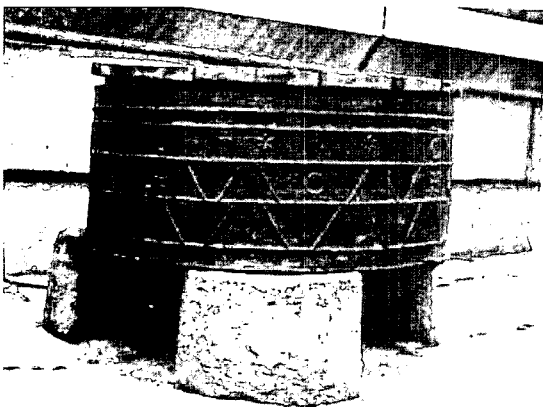
‘무분토기’ 나 ‘즐목문토기’ 와 같은 역사 유물을 통하여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우리나라는 불을 사용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도성을 축조하고, 왕궁 등 대건축물을 짓고, 민가(民家)가 인접하여 지어짐으로서, 화재가 사회적 재앙으로 등장하게 된 삼국시대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방화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 들어서서 수도개성을 중심으로 인구집중이 이루어지고 병란이 잦아지면서 삼국통일신라시대보다 주택, 궁전, 창고 등에 화재 발생 빈도가 많

았다. 별도의 금화(禁火)를 담당하는 국가조직은 없었으나 중요장소에는 금화를 담당하는 관리를 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창고를 지하에 설치하고,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꾸고 방화, 실화자를 엄히 처벌하는 조치가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1417년 금화법령이 공포되고 이러한 법령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종8년(1426. 2. 26.) 도성안에 금화를 전담할 기관으로서 금화도감을 설치하여 병조 소속으로 발족시켰으니, 오늘날 소방기관의 모태가 되리라 본다.

당시 금화도감은 궁궐속 또는 민가에 있는 화약고의 교외 이전, 민가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기와지



[그림 1] 경복궁 근정전 월대의 두무(豆撫)



[그림 2] 덕수궁 화재(1904년) 「불타는 조선의 왕궁」이란 제목의 영국화보 주간지「그래픽」1904.6.11일자에 실린 그림이다.



봉 설치, 인접세대간 방화담벽 설치, 행랑 10칸마다 우물을 하나씩 파게하고, 각 관청은 우물을 2개씩 파게하여 방화수를 확보토록 하는 등 왕명을 받아 활동하였는데, 이 금화도감은 1426년 6월 19일 성문도감(城門都監)과 합병 수성금화도감이라 칭하고, 공조(工曹)에 소속되었다.

일제시대에 들어와서 1910년 6월 조선총독부 외청격인 경무 총감부를 두고, 무단통치의 충추적 역할을 수행케 하였는데, 이때 경무 총감부에는 기밀과, 경무과, 보안과 3개과를 두고 소방업무는 보안과내 소방계를 두고 소방업무를 관장토록 하였고 1919년 3.1 만세운동을 기점으로한 문화정책 표방으로 외청격이던 경무 총감부는 총독부내 경찰국으로 개편되면서 소방국은 경찰국 보안과내로 편입되었고, 그 후 중일전쟁이 본격화됨으로써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호과를 신설 별도 소방사무를 관장토록 하였었다.

지방 소방기구 또한 경찰기구에 편재하여 소방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이때부터 지방도시에 소방서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1925년 서울에서 경성소방서가 설치된 것을 시발로 1939년 부산, 평양소방서, 1941년 청진, 1944년 인천, 함흥소방서가 설치되었다.

대한민국과 소방제도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미군정시대 경무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소방위원회를 인수한 내무부는 1948. 11월 소방기구를 경찰체제 치안국내 소방과를 포함시켜, 소방행정, 소방지도 훈련, 소방사상을 선정 보급하게 함으로써 현대적 소방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이를 기회로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소방업무가 국가업무에서 지방자치 업무로 확대이관 되면서 소방본부제가 발족하고, 1971년 부산을 기화로 각도 및 직할시 소방본부제가 실시되었고, 국가 업무도 1975. 8. 민방위제도 실시와 더불어 소방분야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로 개편돼 소방과, 방호과, 예방과로 내려오다가 1995. 10. 19. 민방위 본부가 민방위 재난통제 본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구조구급과 장비통신과를 추가하게 되어 5개과를 갖게 되었다. 이 민방위재난통제 본부는 2004. 6월 소방 방재청으로 행정 자치부

외청으로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방법령 제정과 변천

정부수립초기까지 그 이전 소방활동은 주로 화재진압이었으나, 50년대 후반부터 예방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50년부터 소방법 초안을 작성 1953년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후 1995년 7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제정이 이르다는 이유로 폐기하였다가 그 후 재상정하여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 485호로 최초 현대적 소방법이 제정 공포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 후, 변천사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제1기 (1958~1967)

홍행장, 백화점 등 공중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와 학교, 공장 등 다수자가 근무하는 장소로 구분하고,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주로 건평 300평 이상 건물에 화재발생 탐지설비를 설치토록 하였었다.

제2기 (1968~1980)

소방시설 대상 특수장소를 20개군으로 분류하고 용도별, 면적기준에 의거 소방시설설치기준을 정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등 벌칙을 강화하였었다.

제3기 (1981~1991)

특수장소를 1,2,3종과 지정문화재, 지하가로 구분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종별, 세부용도별, 면적별로 바뀌었다.

제4기 (1992~2001)

특수장소 분류 기준을 근린생활에서 복합건축물까지 25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소화기는 150 m²에서 33 m²로 확대하고, 옥내소화전 설비는 2,100 m²에서 3,000 m² 초기수단을 강화하고, 16층 이상 아파트에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의 의무화 등 시설기준을 정비하였다.

제5기 (2001~현재)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

법으로 구성된 4분법 체계로 갖추고 현재에 이른 것이다.

소방시설 변천

- 1960년대 도입된 소화설비는 시대 발전과 더불어 도시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복잡화함으로써 그 시설의 적용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60년대 초기 건설된 대왕코너, 대연각 호텔과 같은 대형 건물들이 가장 신뢰도 높은 자동식 소화(스프링클러) 설비가 시설돼 있지 않은 관계로 대형화재를 일으킴으로써 고가 사다리 도달높이 한계인 11층 이상부분 부터 시설토록 의무화 하였으나, 호텔같은 건물은 84년부터 전층으로 확대시설토록 하였고, 아파트 역시 94년부터 16층 이상부분에 시설토록 하였으나 이를 더욱 강화하여 2004년부터 전층으로 시설토록 확대한바 있다.
- 95. 8월 복합건물을 정의하고 연면적 5,000 m² 이상시 전층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업종의 건물 전층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 2001년 화성 C랜드 화재를 계기로 규모 600 m² 이상의 청소년 노유자 시설에 대하여도 의무화 하였으며, 동년 인천 호프집 및 신촌 근린 지하 화재를 계기로 다중 이용업 지하 영업장 부위 150 m² 이상시 간이형 스프링클러 시설을 의무화 하였다.
- 계단실은 피난시 중요한 수직피난 동선으로 당초 건축법 시행령에 급, 배기 방식의 제연설비의 의무화가 돼 있었으나, 95. 8월 소방법에서 영미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방호개념인 가압급기 방식을 도입. 시설기준 계산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피난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소방시설관련업의 발달

소방시설 설계업

- 설계분야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자가 자기부담으로 설계하던지, 건축기계, 전기분야

기술자가 설계해 왔었으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소방시설의 설계는 보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어 1983. 12. 30. 법률 제 3675호로 시공 신고시 소방설비기사 또는 연면적 3만 m²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소방기술사가 작성 또는 검토 확인된 설계도서를 첨부토록 조치한 이후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1993. 12. 27. 기사, 기술사가 설계회사에 소속되고 그 기술자의 지휘 책임아래 설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등록 기준, 영업 범위 등을 정하여 등록된 업체만이 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계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표 1>

- 2004. 4.27.(대통령령 제 00229호) 소방시설 설계업은 전문소방 설계업과 일반소방 설계업으로 구분하여 새로이 신고를 받아 전문설계업은 모든 규모 시설에 대하여 설계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설계업 신고자는 아파트 및 연면적 3만 m²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기술사 업무도 종전에는 설계, 감리를 병행할 수 있었으나 설계나 감리 한가지 업무만 전담토록 하여 전문화를 꾀하였다.

소방시설 감리업

- 94. 7. 20일 감리의 종류, 영업범위, 등록기준을 정하여 공포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연면적 3만 m² 이상 건물에는 상주감리 그 이하는

<표 1>

종류	등록기준	영업범위
1급 설계업	기술사 1인 보조기사 2인	· 모든시설
2급 설계업	기계 소방기사 1급 1인 보조 기사 2인	· 아파트 · 연면적 1만 m ² 미만
	전기 소방기사 1급 1인 보조 기사 2인	
3급 설계업	기계 건축기계기술사, 건축사 냉,난방 기술사	· 연면적 5,000 m ² 미만
	전기 건축사,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보조 1인	



비상주 감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 또한 2004. 4. 27. 일반감리업과 전문감리업으로 개편되어 연면적 10만 m² 이상, 30층 이상 건물에는 소방기술사 상주, 10 m² 미만에는 특급기술자를 상주케 하는 등 조취를 취함으로써 발전되게 된 것이다.

소방시설 점검업

- 소방시설이 언제라도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철저한 점검과 유지관리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검과 유지관리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률 380호(1982. 9. 15.)로 방화 관리자 또는 위험물 안전 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안전 점검을 실시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었다.
- 1991.3.12(법률 4419호)로 보다 전문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점검업의 자격, 장비, 인적구성 등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소방시설 관리사제도를 발족시켰으며 작동기능점검 연구회,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 실시케 하였다.
- 1994. 10. 27.(법률 692로)로 영업범위를 규정하며 연면적 10,000 m² 이상 대상물 소방시설 점검

을 소방시설 관리사가 고용된 점검 업체가 수행토록 하였다.

소방시설 공사업

- 1958. 3.(법률 485호)로 제정된 소방법 소방시설의 종목을 정하고, 소방시설을 공사 또는 정비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 제한이 별도로 있었다.
- 1973. 2. 28.(법률 2503호) 최초 소방설비업 면허제도 도입
소방설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소방설비 공사업 면허를 주었으나 자본금, 장비 등에 관한 사항과 면허절차 등이 등록되지 않아 선호하지 못하였다.
- 1975. 12. 31. 면허제 등록제로 변경
소방시설을 1류에서 7류의 공사업과 정비업으로 분류하고 자본금,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방설비 공사업 제도를 체계화 하였다.
- 1983. 12. 3.(법률 3675호) 업체난립 과다경쟁, 부실공사 초래로 등록제를 면허제로 강화하였다.
- 1995. 8. 10. 소방시설 정비업 폐지하고 전문, 일반공사업으로 변경하였다. (㉔)